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6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6월 19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6월 26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15호

2. 제정이유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 임신부철분제 : 7개월분 이내
 -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 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10만원 범위내 전입기념품, 300만원 범위내 빈집정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전액, 50ℓ 20대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10만원 범위내 전입대학생 장학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전액, 5대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등

○ 그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마.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바. 지원금품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4. 검토보고 요지

○ 동조례안은 최근 거창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한 초고령 사회(65세의 인구가 20%이상)로의 진입으로 우리 거창은 사회·경제 등 모든 삶의 질 지표 영역에서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선 4기 군수 취임후 풍족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현상을 막고 향후 10만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 「인구증가정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써

○ 동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동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구분)에서는 4개의 지원사업(출산장려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을 총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정의)에서는 동조례 시행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2장(출산장려 지원)은 현재의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의 내용이 동조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폐지하면서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이 현재 30만원→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현재 100만원→500만원으로 일부 확대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변경사유와 인근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설명이 필요함.

- 제3장(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제4장(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및 제5장(전입장려 등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7조(인구정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었음.

※ 양육비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 : 6개시군

- 통영시,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 2개시군(사천시, 남해군)

※ 전입장려 등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 2개시군(남해군, 창녕군)

- 남해군 : 전입지원금 30만원, 빈집정비 50만원, 기타

- 창녕군 : 전입지원금 미시행, 전입세대 무료설계 지원

○ 그러나 영육아 양육비의 지원기간이 만5세까지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이유

○ 지난 제13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였던 2007-15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거창군의 인구 감소현상을 막고 향후 10만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이었으나, 일부 내용이 미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동조례안은 군정시책의 최대 역점시책인 만큼 군민들 또한 지대한 관심이 높아 오래동안 보류할수 없는 실정이므로 나름대로 최선의 묘책을 찾기 위해 토론한 부분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함.

다. 수정내용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정의)</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 한다.</p> <p>2. “산전진찰비”란 태아를 임신하여 분만 전까지 진찰(임부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3.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4.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p> <p>5.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p> <p><신설></p> <p>6.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p>	<p>제3조(정의)</p> <p>1. (원안과 같음)</p> <p><삭제></p> <p>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p> <p>3. “협약업체라”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p> <p>4. (원안 제3호와 같음)</p> <p>5. (원안 제4호와 같음)</p> <p>6. (원안 제5호와 같음)</p> <p>7. “귀농세대”라 함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를 말한다.</p> <p>8. (원안 제6호와 같음)</p>

<p>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p> <p>7.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p>	<p>9. (원안 제7호와 같음)</p>
<p>제5조(지원내용)</p> <p>1. 임부 산전진찰비 <신설></p> <p>2. 임산부 철분제</p> <p>3.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용품</p> <p>4.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p> <p><신설></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p> <p><삭제></p> <p>1. 임신 축하 기념품 : 10만원이내</p> <p>2. 임산부철분제 : 7개월분(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p> <p><삭제></p> <p>3. 출산장려금 : 둘째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p> <p>4.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00만원 이내</p>
<p>제6조(지원대상 자격)</p> <p>①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p> <p>②제5조제2호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p>	<p>제6조(지원대상 자격)</p> <p>①제5조제1호 및 제2호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p> <p>②제5조제3호 및 제4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p>
<p>제7조(지원규모 및 방법)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p> <p>①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p>	<p>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삭제></p>

<p>1.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이내 2. 임신부 철분제 : 7개월분(임신5개월 부터 분만 후 2개월)이내 3.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4.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5.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 500만원 ②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임부 산전진찰비는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신설></p> <p>2. 임신부 철분제는 매월 1개월분씩 7개월간 지급한다.</p> <p>3.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p> <p>4.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한다.</p> <p>5.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에 따라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3년간은 출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에 따라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설></p>	<p><삭제> <삭제></p> <p>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한다. 2. (상정안과 같음)</p> <p><삭제></p> <p>3.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삭제></p> <p>4.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 지원한다.</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및 육아용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 등록 후 수령한다.</p>

<p>3일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원대상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제5조제2호 임신부 철분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 등록 후 철분제를 수령한다.</p>	<p>②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장려금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출생아건강보험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원대상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출생아 건강보험은 10일 이내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협약업체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협약업체에 지급한 후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제9조(지원의 중단)</p> <p>①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p> <p><신설></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③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보험기관에서는 만기 시점에서 만기 해약금을 거창군에 환급 조치한다.</p> <p>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진출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거창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거창군 수입으로 귀속된다.</p>
제12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한다.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p> <p>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의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지원(행정과)</p> <p>2. 전입세대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전입기념품 지급(행정과)</p> <p><신설></p> <p>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p> <p>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종합민원실)</p> <p>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p> <p>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장학금 지원(전략사업추진단)</p> <p>7.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전략사업추진단)</p> <p>8. 전입세대에 대한 5매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p> <p>9.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p> <p>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p> <p><삭제></p> <p>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p> <p>3. (원안과 같음)</p> <p>4. (원안과 같음)</p> <p>5. (원안과 같음)</p> <p>6. (원안과 같음)</p> <p>7.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전략사업추진단)</p> <p>8. (원안과 같음)</p> <p>9. (원안과 같음)</p>
제24조(포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보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p> <p>③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 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4호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④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